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어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계절근로(E-8) 체류 자격을 가지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를 통해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. 또한,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 제도와 불일치하는 조문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2호 중 “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”을 “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의2 제6호에 따른 기술연수(D-3)의 체류자격을 받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의2 제20의2호에 따른 계절근로(E-8)의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으로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국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의2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절근로(E-8)의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2(외국인의 범위) 법 제7 조제4항에서 “「외국인근로자 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 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외국인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을 말한다.	제3조의2(외국인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 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「국민건강보험 법」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 장가입자가 된 외국인	2.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별 표 1의2 제6호에 따른 기술연 수(D-3)의 체류자격을 받은 - ----- ----- ----- -----
<신 설>	3.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별 표 1의2 제20의2호에 따른 계 절근로(E-8)의 체류자격을 받 은 외국인으로서 「국민건강 보험법」 제109조제2항에 따 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505